

## 2013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계획(안)

### 1. 현장실습 목적

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(기관)의 현장체험을 통하여 사회를 이해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졸업 전 경력개발과 졸업 후 자기 진로설정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함

### 2. 현장실습 기간(학기제) : 학기중 20주 800시간 이상

### 3. 현장실습 신청기간 : 2013. 1. 4(금) 까지

### 4. 교육과정 및 학점인정

#### 가. 교육과정

과 정	교과목명	실습기간	교과구분	인정학점
학기제	국내현장실습(4)	20주 800시간 이상	일반선택	18학점

#### 나. 학점인정

- 1) 대상학기 : 2013학년도 제1학기 이수학점에 포함
- 2) 교과구분 : 일반선택
- 3) 성적평가 : 이수 P(Pass) / 미이수 F(Fail)

#### 다. 학점제한

- 1) 학기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교내에 개설된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없음
- 2) 현장실습은 재학중 최대 36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

#### 라. 성적평가 항목

연번	구분	점수	평가방법
1	출근상황부	10	결석 1회당 2점 감점
2	주간활동보고서	15	작성 유무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 (양호:15점, 보통:10점, 부족:5점)
3	종합보고서	15	작성 유무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 (양호:15점, 보통:10점, 부족:5점)
4	현장실습기관성적표	40	현장실습기관에서 평가
5	현장실습지도보고서	20	현장실습지도결과를 종합하여 평가
합 계		100	실점 60인정(P), 미인정(F)

### 5. 참여학생 자격

가. 학기제 : 실습학기 기준 6개 학기 이상 재학생

나. 학칙에 의하여 징계(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퇴학)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

## 6. 참여 기업(기관) 자격

- 가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(출연)기관
- 나.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
- 다.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
- 라.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## 7. 현장실습 취소 대상

- 가. 현장실습 제외 또는 제한 대상(학생) 및 현장실습 제외 기업(기관)에 해당된 경우
- 나. 해당 기업(기관)에 이미 채용된 경우
- 다. 현장실습 도중에 채용(고용형태 불문)될 경우
- 라. 지도 방문 시 실습학생이 약정된 실습장소에 없는 경우
- 마. 실습 중 교직원이 지도 방문하여 실습내용이 목적과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

## 8. 참가신청 절차

- 가.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(취업지원센터)로 제출
  - 1) 현장실습 참가신청서(학생 본인 작성) 1부
  - 2) 현장실습생 활용신청서(실습기관에서 작성) 1부
  - 3) 현장실습협약서(실습기관에서 작성) **2부**
- 나. 등록금납부 : 학기제는 일반등록금 납부기간에 학기등록을 하여야 함

## 9. 실습생의 의무

- 가. 실습생은 실습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작성한 실습일지(출근상황부, 주간활동보고서, 종합보고서)와 실습기관성적표를 실습기관으로 부터 받아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
- 나. 학칙과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
- 다.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함
- 라. 실습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로 연락하여야 함

## 10. 문의 : 현장실습지원센터(T.850-5618, 5612)



## 현장실습 참가 신청서(학생용)

소 속	_____학과(전공) _____학년 _____학기 이수중		
성 명		학 번	
주 소			
연 락 처	휴대폰: _____	자택: _____	이메일: _____
계좌정보	은행명: _____	계좌번호: _____	예금주: _____
실습기간	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(총 _____주)		
1일 실습시간	_____시간	총 실습시간	_____시간
교육과정	계절제(____), 학기제(____)	교과목명	국내현장실습(3), 3학점 (____) 국내현장실습(4), 6학점 (____)
실습기관	실습기관명		
	실습장소(주소)		
	실습내용(업무)		
지원신청 및 서 약	<p>본인은 현장실습을 이수하게 될 경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며, 현장실습이 학교교육과 연계되어 생산적인 학습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또한 실습도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보험법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하며, 위와 같이 현장실습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		
<p>_____년 _____월 _____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_____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추천교수 : _____ (인)</p>			
<p><b>대구대학교 총장 귀하</b></p>			

## 현장실습 협약서

제1조(목적) 이 협약서는 \_\_\_\_\_ (이하 '갑'이라 한다)과 실습생(이하 '을'이라 한다) 과 대구대학교 총장(이하 '병'이라 한다) 상호간의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습기간 및 장소) 현장실습수업(이하 '현장실습'이라 한다)기간은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부터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까지( 주)로 하며, 실습장소는 현장실습생활용신청서에 의하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.

제3조(갑의 의무) '갑'은 실습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'을'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직무를 배치하고,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4조(을의 의무) '을'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.
2.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.
3. 실습을 위한 기계, 공구,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.
4.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'갑'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.
5. 현장실습도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본 대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.

제5조(교육 기준시간) 교육 기준시간은 1일에 8시간, 1주간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수당) 수당은 '갑'과 '을'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포함 4주 기준으로 월 \_\_\_\_\_원정(식비, 교통비, 숙박비)으로 할 수 있으며, 갑의 내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의 평가) '갑'은 '병'이 정한 기준에 따라 '을'의 현장실습 및 출근상황에 대한 현장실습기관성적표,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교육 종료 즉시 '병'에게 통보한다.

제8조(보험료의 부담 등) ① 현장실습기간 동안 '을'에 대한 현장실습보험은 '병'이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.

② '갑'은 '을'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청구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육협약의 해지) ① '갑'과 '을'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

때에는 협약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실습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중단된 월의 수당 지급금액산정기준은 (월 지급액 × 근무일시 / 25일)로 한다.

**제10조(기술자문 등)** ① ‘병’은 기술경영상의 자문을 받기 위한 ‘갑’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‘갑’이 기술 개발을 위하여 ‘병’이 보유한 기기 사용의 요청이 있을 경우 ‘병’은 적극 협조한다.

**제11조(기타)**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‘갑’, ‘병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  년   월   일

**갑(기업·기관)**

- 주 소 :
- 회 사 명 :
- 대표(장) : (직인)

**을(대구대학생)**

학과(전공)	학번	성 명	실습기간

**병(대학교) : 대 구 대 학 교 총 장** (직인)

※ ‘갑’(기업·기관)의 직인란에는 반드시 직인 또는 법인도장을 사용하여야 함

※ ‘을’(대구대학생)란이 부족하면 추가해서 사용



